

자동차관련 세제는 취득·보유중심에서 이용중심세제로 개편되어야 한다



曹鍾培

〈건설교통부 조정1과 사무관〉

자동차 관련세제의 현황

1995년 5월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대수는 784만대를 넘어섰다. 이중 자가용 승용차는 67%인 527만대로 자동차 대중화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자동차의 보편화에 따라 개인적 편익은 향상되었으나, 반면에 자동차 급증에 따라 야기되는 교통체증, 환경오염, 에너지 낭비, 산업활동 저해 등의 많은 사회적 불경제성을 동시에 수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의 이용에 따른 개인적 편익에 대하여는 이용자에게, 사회적 비용에 대하여는 원인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원칙하에서 자동차 이용자에게 자동차세와 유류세등 보유와 이용에 따른 관련 세금을 부과하여 자동차 보유 및 이용억제와 동시에 부족한 교통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교통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의 보유억제(사치성소비재 인식)에 초점을 두어 부과되어온 자동차 관련 세금이 자동차의 생활필수품화에 따라 보유억제보다 이용억제 위주로 바뀌어야 함에도 기본 골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보유에 따른 세금은 선진외국에 비해 과다하고 이용에 따른 유류가격 및 세금은 낮은 비합리적 구조를 지니고 있고, 이에 따라 자동차의 이용에 따른 교통체증, 도로훼손 등의 제반 사회적 불경제성이 관련 세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불필요한 자동차운행의 한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표-1〉 주요국의 자동차관련세 납부내역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취득	2,188	200	408	750	1,167
보유	339	16	372	110	124
운행	375	61	453	521	242
계	2,902	277	1,233	1,381	1,533

※ 1500cc 차량기준, 연간 1000l 유류소비가정, '94 환율기준

자동차 관련세제체계의 복잡과 비합리

현재 자동차 보유 및 운행과 관련하여 부과되어 있는 조세는 국세 8종류, 지방세 4종류, 그리고 도시철도공채의 준조세를 포함하여 총13종류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자동차 유통단계별로는 구입단계에서 3종류, 등록단계 5종류, 보유단계 3종류 그리고 운행단계에서 2종류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에 비해 주요 외국의 경우, 일본을 제외하고는 구입과 보유 그리고 이용단계의 세금이 각 1~2종류로 총 4~5종류에 불과하며 이용단계의 세금종류가 전체 세목의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련세금이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복잡하고 보유위주의 세금이 대부분으로 이는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간주, 단일세원에 대해서 각종 세금을 누증시킨 결과이며, 따라서 세금에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2중과세(Tax on Tax)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 조세체계와 그 금액도 정확히 구분,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다.

〈표-2〉 자동차 관련세 종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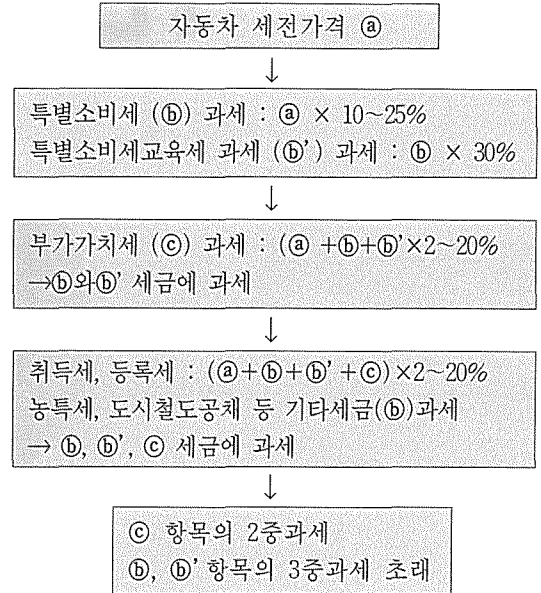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구입과정	3	1(판매세)	1(소비세)	1(부가가치세)	1(부가가치세)
등록과정	5	-	1(자동차취득세)	-	-
보유과정	3	1	2(자동차세, 중량세)	1(자동차세)	1(자동차세)
이용과정	2	2(연료세, 연방소비세)	2(휘발유세, 소비세)	2(광유세, 부가가치세)	2(연료세, 부가가치세)
계	13	4	6	4	4

(주)한국의 경우 수입차의 판매를 포함한 경우 14종류의 세금이 부과됨.

자동차 관련세제의 개선방향

승용차를 비롯한 자동차 소유의 증가는 국민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경제적 현상

〈표-3〉 이중과세의 예



이므로 계속하여 자동차의 소유에 중과세하는 정책이 지속될 경우 소유감소효과는 그리 크지 않으면서 차량이용을 조절할 수 있는 타세금제도의 적용여지를 없애 버릴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자동차의 소유와 이용에 따른 세금도 자동차 소유자체의 억제보다는 이용과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과세함으로써 보유보다는 불필요한 이용을 자제케 하는 이용과세 강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조세 형평성에도 부합된다고 본다.

따라서 자동차 관련세는 부족한 투자재원조달 목적의 달성과 함께 비용부담의 형평성과 교통수요의 합리적 관리를 통한 교통난 완화를 위해 이용과세의 사용자부담 과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세계개편이 추진되어야 하고 지방재정의 손실에 대한 보전방안도 함께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